

동두천시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5-417
----------	-------

제출연월일 : 2010. 1.
제 출 자 : 동 두 천 시 장

개정이유

○ 2009. 5월 27일 농지법이 법률 제9721호로 개정되어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지법 제44조(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부터 제48조(벌치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까지 조문이 삭제되어 동두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임.

주요내용

“동조례 폐지”

동두천시조례 제 호

동두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동두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실과	농업녹지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농업녹지과장 한천일
	담당·팀장 직위·성명	농정담당 정두환
	담 당 자 성명·전화	이일주 (860-2312)